

직제규정 개정 사유서

1. 개정 규정명칭

- 「직제규정」

2. 개정사유

- 교육혁신본부 산하 ‘교육성과관리센터’를 ‘IR센터’로 명칭변경
-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팀 통합

3. 붙임

- 「직제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직제규정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19조(교육혁신본부) 교육혁신본부에 <u>교육성과 관리센터</u> , 교수학습지원센터, 역량개발인증센터 를 둔다.	제19조(교육혁신본부) 교육혁신본부에 <u>IR센터</u> , 교수학습지원센터, 역량개발인증센터를 둔다.
제23조(입학홍보처) 입학홍보처에 홍보실, 입학 관리팀, <u>입학사정팀</u> 을 둔다.	제23조(입학홍보처) 입학홍보처에 홍보실, 입학 관리팀을 둔다.
	부 칙
	이 규정은 202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